

제360회 정례회  
2017. 11. 30.(목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박우양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 채권자의 도지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, 약칭 사용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(안 제2, 3, 4, 7조)
  - ‘기타’ → ‘그 밖의’ , ‘상이’ → ‘다른 점이’
- 나. 약칭 사용을 정비함 (안 제3조)
- 다.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를 삭제함 (제6조 삭제)
- 라.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, 별지 제5호 서식은 삭제함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,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증채무 채권자의 도지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, 약칭 사용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임.
- 먼저 본 조례안에서 제6조(보고)와 이에 따른 채권자 보고서식인 <별지 제5호서식>을 삭제한 것은,
  - 기존 제6조에 규정된 채권자의 보증채무현황 보고의무 조항은 ‘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’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규정을 벗어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임.
  - 따라서, 제6조를 삭제하고, 이에 따른 채권자 보고서식인 <별지 제5호서식>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.
- 또한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3호의 용어 중 ‘기타’를 ‘그 밖의’로 바꾸고, 안 제4조제2항의 ‘상이’를 ‘다른 점’으로 변경하였으며,
- 기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‘승인’가 ‘의결’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, 안 제3조 및 제7조의 용어 중 ‘승인’은 상위 법률인 「지방재정법」에 사용된 용어인 ‘의결’로 통일함.
- 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약칭 사용 표기 없이 잘못 사용된 약칭인 ‘도’를 ‘충청북도’로 변경함.
-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함.
  - ‘기타’ ⇒ ‘그 밖의(에)’ / ‘자’, ‘지’ ⇒ ‘부터’, ‘까지’

## 나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재정법」의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
- 절차상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